

“군복무 중 학점 인정제” 시행(안)

2017년 8월 3일

1 군 복무 중 학점 인정제

가) 목적

군 복무로 인한 학업단절 극복과 생산적 군 복무여건 조성을 통해 복무의욕을 증대 시킴으로써 군 전투력 향상과 국가적 차원의 인재 양성에 기여

나) 2007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시행

다) 관련 근거

- ① 병역법(제73조) 개정: 입영 중 원격수업에 의한 학점 취득(07.10)
- ② 고등교육법(제23조), 고등교육법시행령(제15조 개정) (14.2.14)
학기당 6학점, 연간 12학점 취득
-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(제3조): 학점인정 기관에 군 시설 포함(07.4.4)

라) 학점 인정 방법(2가지)

① 대학원격강좌 학점인정

- 군생활 중 병사들이 부대 내 설치된 인터넷을 통해 대학에서 개설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것
- 추진 실적 및 현황

구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
개설대학	99개	110개	122개	134개
강좌 수	3,106개	3,337개	3,506개	3,871개
수강인원	10,297명	11,223명	13,856명	12,294명

② 군특기병 교육훈련 학점인정

- 병과학교 교육과정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평가를 통

과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소속 대학 학칙에 따라 2-3학점 인정

- 추진 실적 및 현황: 90개 교육과정 운영, 40,555명 수료
- 전국 102개 대학에서 학점인정 시행

2 주요 대학 사례

	서울대	연세대
시행	2016학년도부터 시행	2017학년도 2학기
시행형태	대학 원격강좌 학점인정	대학 원격강좌 학점인정
개설 교과목	2016년: 2개 개설(음악의이해, 경제학원론) 2017년 1학기: 4개 개설 (음악의이해, 경제학원론, 말과 마음, 사람·뇌 구조와 기능) 2017년 2학기: 5개 개설	2017년 2학기 1개 개설 (로마그리스고전집중탐구)
학기당 수강인원	약 120명	
강의 형태	온라인 강의(군 휴학자를 위한 별도 교과목)	온라인 강좌(일반 강좌)
성적처리	P/F 형태 (성적인정 신청하는 학생만 성적표 기재)	P/F 형태 (성적표 표기)
성적처리 일정	복학시 학점인정 신청	이수한 직후 계절학기 성적으 로 인정

3 본교 시행안

가) 2017년 2학기부터 “대학 원격강좌 학점인정” 형태로 시행

나) 본교 수강 및 학점 인정 교과목

- ① 본교에서 개설한 MOOC 강의
- ② 본교에서 개설한 NeMo 강의(추후 시행)
- ③ 타학교와의 학점교류(추후 해당 대학과의 협의를 통하여 시행여부 결정)

다) 2017학년도 2학기 대상 강좌(총 2개 강좌)

- ① 민법: 명순구 교수(법과대학 전공선택)
- ② 정보적 사고: 김현철 교수(1학년 공통교양, 2017학번부터 필수)

라) 수강료 기준: 본교 계절학기 수업료
수강료는 국방부에서 일괄 수합하여 본교로 입금 예정

마) 학점인정: 학기당 6학점, 연 12학점 이내

바) 성적

① 학점인정 형태로 시행(성적표에 "군복무 중 인정 과목"으로 표기)

② "P/F"로 평가(일반 학생과의 차이점 및 한계 인정)

③ 재수강 가능

4 학점 취득 관련 국방부와 연계된 행정 절차

가) 매 학기 학점인정 가능 교과목을 국방부(군인공제회)로 송부

나) 수강신청/변경/취소: 군인공제회(<http://www.narasarang.or.kr>)를 통하여 학생 신청

다) 수강신청 결과 확인/승인: 학사지원본부 담당자 협조 -> 승인 통보(군인공제회)

라) 개강

마) 수강료 정산: 군인공제회 -> 대학(학사일정의 1/4 이후)

바) 성적처리(대학 -> 군인공제회/이수결과 통보)

5 시행 관련 장점

가) 본교 군입대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, 교육의지 제고

나) 강좌 추가 개설의 부담 완화